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1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 출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이용기관, 처리정보, 이용 업무 등을 규정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마련

(안 제3조의2 신설)

나.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관련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 업무, 이용 기관, 연계 정보 등을 규정(안 제14조의2제2항)

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기관 등을 규정(안 별표3)

라. 보호출산 업무 수행을 위해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에 관한 정보 등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제공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
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추가 급여
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11.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급여

제1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같은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호출산 또

는 산후 아동보호의 신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출산 지원, 같

은 법 제11조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

별표 3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

7.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별표 4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의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 및 같은 법 제
11조의 아동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같은 법 제15조의 출생증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제공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u> <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u> <u>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u> <u>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u> <u>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추가 급여</u> <u>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u> <u>6.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u> <u>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u> <u>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u>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생략)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
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
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
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에 따른 복지 급여

9.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에 따른 교육비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

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

원

11.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급여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

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법」 제7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상담, 같은 법 제9조 및 제14

4.·5. (생략) ③ ~ ⑤ (생략)	<u>조에 따른 보호출산 또는 산 후 아동보호의 신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출산 지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출생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아동의 보호조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 등에 관한 업무</u>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3144